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7. 15.(목)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4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 (2010-42-187)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를 인증하는 기관으로서 원안대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지정하기로 의결함.

- 지정기간은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 ABC : Audit Bureau of Circulations [발행부수공사(公査)기구]

< 수정 내용 >

수 정 전	수 정 후
지정기간 : 1년 (2010. 7. 15. ~ 2011. 7. 14.)	지정기간 : 1년 (2010. 7. 20. ~ 2010. 7. 19.)

2)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에 관한 건 - (주)강원네트웍스, (주)강원방송, 하나방송(주) - (2010-42-188)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에 의거, 김응태의 (주)강원네트웍스에 대한 '최대주주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인가하고,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거, 김응태의 (주)강원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신청 건과 (주)커뮤니스의 하나방송(주)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주)강원네트웍스에 대한 최대주주 인가 신청(신청인 : 김응태) : 인가
- ② (주)강원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신청(신청인 : 김응태) : 조건부 승인

< 승인 조건 >

1. (주)강원방송에게 부과되어 있는 재허가조건('09. 3. 30)과 시정명령('10. 3. 17)을 이행할 것
2. (주)강원방송의 경영계획서('10. 7. 2)에 제시한 다음의 방안을 이행할 것
 - 증자 및 합병 계획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과 담보제공 제한 등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 시청자 권익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방안

- ③ 하나방송(주)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신청인 : (주)커뮤니스) : 조건부 승인

< 승인 조건 >

1. 하나방송(주)에게 부과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조건('08. 2. 12)을 이행할 것
2. 하나방송(주)의 경영계획서('10. 7. 2)에 제시한 다음의 방안을 이행할 것
 - 디지털방송 실시 등 시설 투자 방안
 -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 시청자 권익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방안

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0-42-189)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디지털전환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아날로그TV 종료일’ 및 ‘저소득층 지원대상·지원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는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로 정함
- 시범사업 지역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및 대상 방송국

구 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종료일시	'10. 9. 1, 14시	'10. 10. 6, 14시	'10. 11. 3, 14시	'11. 6. 29, 14시
종료대상 방송(보조)국명	KBS현종산제2TV 방송보조국 등 7개	KBS군 동 제 2TV 방송보조국 등 7개	KBS금수산제2TV 방송보조국 등 10개	KBS제 주 제 2TV 방송국 등 11개

※ 다만, 시범사업지역의 방송(보조)국 중 KBS-1TV는 미전환자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종료일로부터 30일간 연장 후 종료

②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

- 지원 대상

당초안 ('10. 6. 1 위원회 보고)	수정안 (입법예고 의견반영)
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1.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전체 2. 차상위계층 중 직접수인가구	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1.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전체 2. 차상위계층 중 직접수인가구 3.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가구 중 직접수인가구

- 지원 방법

당초안 ('10. 6. 1 위원회 보고)	수정안 (입법예고 의견반영)
② 지원대상가구에 디지털 컨버터 1대 무상 제공, 필요시 안테나 포함 ③ 수급권자가 디지털컨버터 대신 DTV 구매를 선택하는 경우 구매보조 지원	② 좌 동 ③ 지원대상가구가 디지털컨버터 대신 DTV 구매를 선택하는 경우 구매보조 지원

4)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안)에 관한 건 - (2010-42-190)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정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시범지역 간 형평성, 아날로그 TV방송의 조기 종료 등을 고려, 기존 울진 등의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 직접수신세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원내용
저소득층	디지털 컨버터 1대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 TV 1대 구매비용 보조
일반세대	디지털 컨버터 1대 무료임대(예치금 1만원, 3년후 양도)
노인, 장애인	디지털 컨버터 설치 등 기술적 지원

※ 디지털 컨버터 2대를 요청하는 경우, 시청자 지원센터에서 확인 후 추가 지원

② 자막방송 및 가상종료

- 직접수신세대 대상 자막방송 및 가상종료를 기존 시범지역 보다 강화하되, 민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자막방송 : '10. 9월부터 매일 5회~10회(총1,572회)

·가상종료 : '10. 12월부터 주 1회~매일 4회(총77회)

③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의장 : 부지사)에서 마련한 바와 같이 '11. 6. 29(수) 14:00에 실시

5)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건 - (2010-42-191)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디지털전환특별법」 및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09. 6월)」에 따라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 “아날로그 TV방송의 강제종료”를 “아날로그 TV방송의 종료”로, “센터 개소일로부터 '13. 3월말까지 운영하되, 추후 필요시 연장”을 “센터 개소일로부터 '13. 3월말까지 운영”으로 수정

○ 주요 내용

①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하고, 체계적인 시청자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②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 추진 체계

- 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과 15개 시·도별(제주 시범사업 포함시 16개) 추진협의회 및 지원센터를 연계한 디지털방송 전환 네트워크 구축

③ 세부 구축 및 운영 방안

- 시·도별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협의회 : 15개 시·도별 구성 (의장 : 부시장·부지사급)
·지자체, 지역 전파관리소, 지역 체신청, 지역 방송사 및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20명 내외)
·분기별 1회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지역별 추진상황 확인·점검, 주민홍보 등 지원사항, 행정기관·방송사 협력방안 등을 심의
- 시·도별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 : 시·도별 1개소씩 구축(제주 시범사업 포함 시 16개소)
·각 시·도 청사 내 설치(사도 협조 필요)를 원칙으로, 지역 전파관리소장이 '센터장'(겸직) 역할을 담당하면서 센터 관리
·센터 개소 : 지역별 실정 등을 감안, 단계별 개소 운영('11년 상반기 구축 완료)
※ 센터 개소 일로부터 '13. 3월말까지 운영

6)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0-42-192)

- 김광수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의 보고를 받고, 주택지역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건축물 지하층에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 조항 신설(안 제17조제2항제2호)
- ② 5회선 미만의 건축물에도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계약해지 후 가공(架空)인입선로의 철거 조항 신설(안 제18조)
- ③ 구내통신회선으로 동선이외에 광섬유케이블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도입(안 별표 3, 제3조제22호 및 제23호)
- ④ 건축주의 편익을 위하여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 정비(안 별표 1, 별표 2)

⑤ 기타 개정사항

- 홈네트워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동통신선로설비 중 설치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미비사항을 정비(안 제1조, 제21조의2, 제3조제15호, 제17조제2항제1호, 제19조제1호, 제32조, 제22조제1항제1호)
- 타 법령과 국제표준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3조제21호, 제11조)

사.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 7. 21.(수),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35)